

예산총칙

201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79,103,617	29,373,109
일반회계	856,232,583	25,686,977
특별회계	122,871,034	3,686,131
공기업특별회계	95,637,960	2,869,139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9,357,453	1,480,724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6,280,507	1,388,415
기타특별회계	27,233,074	816,99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831,819	114,955
수질개선특별회계	441,829	13,255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3,775,455	113,26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81,500	2,445
주택사업특별회계	3,110,251	93,308
농공단지특별회계	4,394,716	131,841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81,000	2,43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190,080	95,702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48,000	1,44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001,080	30,032
도시개발특별회계	3,478,000	104,340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3,799,344	113,98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